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내규

2023. 8. 9.

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학칙 및 제반 내규에 근거하여 학과 내규의 세부내용을 정하여 대학원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도모하기 위해 본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1. 수강신청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원생은 필수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지정필수과목은 국제연구실증방법론으로 한다. 석사과정 지정필수과목은 매학기 개설한다.
- 박사과정 지정필수과목은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요청에 의해 2과목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지정한 필수과목은 자과 과목에 한하지 않는다. 지정된 필수과목 목록은 박사과정 2학기 내에 자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에 따른 학점은 학기당 9학점까지 2개 학기 이내에서 석사학위과정 12학점, 박사학위과정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대학원규정 제18조2 ③항)
- 석사과정 학생은 총 24학점 중 자과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 학과 관련 과목 수강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동일계 석사과정 입학자는 12학점 이내로 학부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은 총 36학점 중 자과과목을 27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동일계열의 타 학과 관련 과목 수강 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동일계 석사과정 입학자는 18학점 이내로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선수과목은 기초수학, 기초통계학, 경제학원론1, 경제학원론2, 경영학원론1, 경영학원론2, 회계학(회계원리), 국제무역비즈니스(국제무역학), 무역학원론으로 하되 학생의 요청 또는 선수과목 미개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가 학생의 관심분야 및 논문방향을 고려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대체 또는 변경된 경우, 대체 또는 변경 사유와 지도교수의 직인이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박사과정 선수과목은 학생의 요청에 의해 지도교수가 학생의 관심분야 및 논문방향을 고려하여 과목을 지정한다.
-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기 이전의 제반 학습지도는 주임교수가 대신한다.

2. 논문지도교수 선정

- 석사 및 박사 과정 입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학기가 경과하기 이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대학원주임교수가 연구지도 및 학사관리를 한다.
-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지도희망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배정된다. 이때, 과도한 집중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는 학생 및 해당 교수의 양해를 얻어 제2희망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3. 종합시험

- 석사과정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시험한다. 본인이 취득한 교과목 중 3과목을 시험하여 전체교수 회의의 결정에 따라 통과여부를 정한다.
- 박사과정 :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평가하며 본인이 취득한 교과목 중 4과목을 시험하여 전체교수 회의의 결정에 따라 통과여부를 정한다.
- 과목의 선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 후 선택하되 종합시험 시험응시 학기에 해당 과목 강의교수가 국외체류 등으로 인해 출제 및 채점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
- 종합시험 문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출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의 규정에 따른다.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응시자격과 면제요건)

- ①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동의를 받아 학과가 학기초에 정하는 기간 내에 종합시험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과가 학기초에 정하는 기간은 학과의 별도 공지가 없는 한, 개강일을 포함하여 3일로 한다. 3일 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 수만큼 연장된다.

제3조(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제4조(시험위원)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5조(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6조(채점) 시험위원은 시험 완료 후 3일 이내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점완료기한은 대학원 시험결과보고일(매학기초 3주차 마지막 업무일)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합격인정과 재시험) ①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응시과목에 모두 통과하여야 종합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③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한 과목에 한해 다음 차수학기에 재시험을 신청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음 차수학기란 불합격한 학기의 다음학기부터 논문심사청구 학기까지로 한다.

④ 불합격한 과목과 다른 과목을 다음 차수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과 9월 초 2주 내에 시험을 실시한다.

제9조(부칙) 이 학과내규는 학과교수 전체회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 단, 구성원의 연구년 등 그 밖의 전체회의 참석불가사유가 있는 경우, 참석가능 구성원 전체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칙) 이 학과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영어시험

-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면제된다. 일정한 점수는 토익 800점, 토플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점수가 제출된 경우, 그 면제기준은 전체교수회의에서 정한다.
- 포탈에서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 후 대체 할 성적표 행정실에 제출
- 외국인학생의 경우는 영어시험 대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관련규정에 따른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 가능)

5.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청구자격

- 박사과정 원생은 학위논문 청구 직전 학기에 상당히 진척된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를 개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는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전학기 종강 2주전에 개최한다.(매년 7월과 12월)
- 박사과정 원생은 Proposal 신청시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게재예정 포함)하여야 학위논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교수회의를 통하여 학위논문의 청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 박사과정 원생의 경우, 모국의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명학술지란 한국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상당하는 학술지를 말하며 학과 교수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검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는 박사논문 제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Proposal 통과여부를 주임교수에게 통보한다.

6. 박사과정 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 주임교수는 매학기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박사과정 원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 주임교수는 평가결과 성취도가 만족스럽지 않은 당사자를 면담하여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7. 박사과정 원생의 외부활동

- 박사과정 원생이 외부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학위과정 이행단계 등을 검토하여 외부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8. 기타

- 일반대학원 국제통상비즈니스학과의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해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시행세칙이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규정에 배치될 경우는 일반대학원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시행세칙은 2019년 9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시행세칙은 소급적용한다. 단, 석사과정 원생과 박사과정 원생이 소급적용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교수전체회의를 거쳐 입학당시의 대학원 규정과 내규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처리한다. 적용 또는 준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 교수전체회의에서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